

의안번호	2210217
의 퇴 인	박상웅 의원
회 답 일	2025. 5. 2.
추 계 번 호	25F2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 기숙사 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규정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 - 취득세: 2028.12.31.까지 면제 - 재산세: 2026.1.1.부터 2028.12.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100% 면제, 이후 50% 감면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근로자의 기숙사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기숙사를 「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그 외에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자 함

□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개별 기업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가액, 취득의 원인과 방법, 보유 현황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현황

(단위: 개)

구분	지역 수	인구감소지역
부산광역시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광역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2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합계	89	

자료: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 2024.2.27.시행

- 현행 「지방세특별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등 업종을 창업하거나 그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규정으로, 해당 지방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입법취지) 2023.3.14.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
- (감면대상) 같은 법 제58조의3 제4항¹⁾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감면율)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 이후 3년간 50% 감면

[표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실적
(단위: 건, 천 원)

	2023			비고
	구분	건수	세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 현행규정	취득세	78	4,685,086	
	재산세	27	43,251	
	합계	105	4,728,337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2023년

- 감면대상 지방세인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재산세는 시가표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취득세의 경우 취득의 원인 및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상이
 - 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동일하나, 토지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누진세율, 건축물은 단일세율을 적용

[표 3] 감면대상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취득세	무 상 취 득	시가인정액	35/1,000	
	유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40/1,000	
	원 시 취 득	사실상의 취득가액 등	28/1,000	
재산세	토 지	시가표준액의 70%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건 축 물	시가표준액의 70%	2.5/1,000	

-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개별 기업의 부동산 취득 원인과 보유 현황, 이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가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제1호~제12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시산업 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